



정 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 ① 우리 모임은 '중부권역 갈등관리 정책포럼(이하 '포럼'이라고 함)'이라 한다.
- ② 영문명은 'Jungbu Policy Forum'라 한다.

제2조(목적)

포럼은 이론적 연구, 토론, 여론 형성 및 현장 활동 등을 통하여 충남중부지역 사회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활동)

포럼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연구활동
2. 사례조사 활동
3. 갈등해결을 위한 현장활동
4. 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출판 활동
5. 기타 포럼의 취지 및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2장 회 원

제4조(회원의 자격)

포럼의 목적과 취지에 동의하고 그 취지에 따라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소정의 가입비와 함께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후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포럼의 회원이 될 수 있다.



제5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포럼의 총회 및 기타 각종 회의에서의 출석 발언권, 의결권, 회직 담임 권을 갖는다.

제6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포럼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회비를 납부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제7조(회원의 징계)

① 포럼의 목적이나 취지에 어긋나는 활동을 한 회원이나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상당기간 이행하지 아니한 회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징계할 수 있다.

② 징계의 종류는 경고, 권리의 정지, 제명으로 한다. 다만, 제명의 경우에는 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회의 의결로 한다.

제3장 임원 및 임무

제8조(임원)

포럼의 활동을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4인 이내의 공동대표
2. 운영위원장 1인을 포함한 운영위원 다수
3. 감사 2인

제9조(임무)

임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 ① 공동대표는 포럼을 대표하며 포럼의 전반적인 활동을 관리한다
- ② 운영위원은 공동대표를 보좌하여 회무를 처리하고 재정을 관리한다
- ③ 감사는 재정의 출납상황 및 포럼 활동의 적절성 여부를 관리, 감독한다.



제10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선출)

① 공동대표와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운영위원은 공동대표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승인한다.

② 공동대표 중 1인을 상임공동대표로 한다.

③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제12조(임원의 보궐)

① 공동대표가 궐위될 때는 총회에서 공동대표를 선출하고, 총회에서 선출할 때까지는 나머지 공동대표들이 업무를 수행한다.

② 감사가 궐위된 때에는 총회에서 새 감사를 선출한다.

③ 새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3조(고문)

① 회원 중에서 포럼의 발전에 공헌하고 회원의 신망을 받는 사람을 고문으로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공동대표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추대한다.

제4장 총회

제14조(권한)

총회는 포럼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포럼의 기본적인 활동방향



2. 임원의 선출
3. 회원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
4. 예·결산의 심의의결 및 회비액수에 관한 사항
5. 회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6. 회원 10인 이상이 총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항
7.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총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항
8. 기타 회칙에 의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할 사항

제15조(의결)

① 총회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칙의 개정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원은 특정의안에 대하여 다른 회원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16조(소집 등)

① 정기총회는 매년 1월에 공동대표가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운영위원회의 의결 또는 회원 20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공동대표 또는 운영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당해년도의 총회에 참석하기 위한 회원의 자격 유무는 그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제5장 운영위원회

제17조(역할)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집행
2. 수입지출 등 재정의 지출사항 관리
3. 연구모임의 승인, 감독, 지원 및 해산



4. 비정기적 모임의 조직 및 주최
5. 회원의 가입승인 및 징계
6. 기타 포럼의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회의 의결사항이 아닌 사항

제18조(구성)

- ① 운영위원회는 총회승인직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공동대표, 연구모임의 대표는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
- ③ 6인 이내의 범위에서 성별, 지역별, 전문분야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 ④ 단, 간사는 연구모임의 대표 부재시 모든 권한을 대리한다.

제19조(의결)

- ① 운영위원회는 공동대표 또는 운영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운영위원 4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공동대표 또는 운영위원장이 그 요청에 따라 소집한다.
- ② 운영위원회는 재적 과반수 이상의 운영위원들의 출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특정사안에 대하여 운영위원은 다른 운영위원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운영위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20조(임기)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6장 연구모임

제21조(연구모임)

포럼은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연구모임을 둘 수 있다.



제22조(구성)

연구모임은 회원 5인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2개월간의 준비활동기간을 거친 후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구성한다.

제23조(보고)

연구모임은 그 활동내용을 정기적으로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운영)

연구 모임의 운영방식은 모임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제25조(운영위원회의 관리 및 지원)

- ① 운영위원회는 승인된 연구모임에 대하여 그 활동을 지원한다.
- ② 운영위원회는 연구모임의 유지와 관련한 기준을 정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7장 기 타

제26조(재정)

포럼의 재정은 회비와 기부금 및 사업수익으로 충당한다.

제27조(회계연도)

포럼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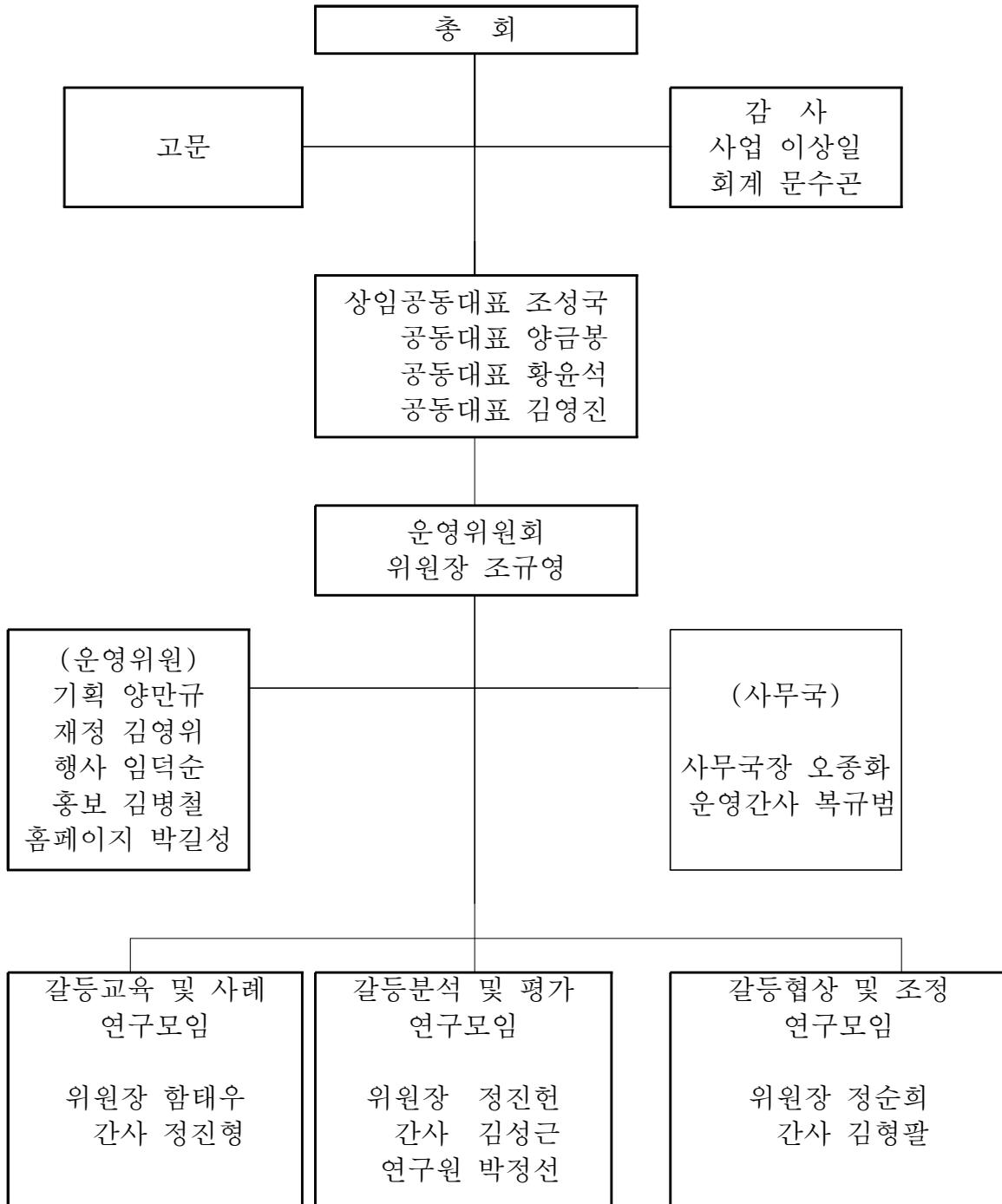
「중부권역 갈등관리 정책포럼」 조직구성

□ 임원담당임무

구 분	임 원 명	담 당 임 무	
공동대표	상임공동대표	선임공동대표	총회선출
	공동대표	공동대표	”
감 사	사업감사	사업분야 감사	”
	회계감사	회계분야 감사	”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	포럼운영 총괄	총회 승인 (승인전 운영위 선정)
	운영간사	포럼 실무운영	총회 승인
운영위원	갈등교육 및 사례연구모임	갈등교육 및 사례담당	”
”	갈등분석 및 평가연구모임	갈등분석 및 평가담당	”
”	갈등협상 및 조정연구모임	갈등협상 및 조정담당	”
”	기획운영위원	총괄 기획담당	”
”	재정운영위원	재정 및 회계담당	”
”	행사운영위원	워크숍 및 포럼담당	”
”	홍보운영위원	대외홍보	”
”	홈페이지운영위원	홈페이지관리담당	”



□ 조직도(안)





□ 총회선출 임원명단(안)

직	성명	소속	비고
상임공동대표	조성국	청양 이장협의회장	
공동대표	황윤석	부여 이장협의회장	
”	양금봉	서천 새마을부녀회장	
”	김영진	보령 이통장협의회장	
감사	이상일	부여 정의사회대표	
감사	문수곤	서천 이장협의회장	

□ 총회승인 임원명단(안)

직	성명	소속	비고
운영위원장	조규영	전 자유총연맹 사무국장	
기획운영	양만규	전 서천민주평통회장	
재정운영	김영위	부여 충효예실천회장	
행사운영	임덕순	단국대 강사	
홍보운영	김병철	충청일보 기자	
홈페이지운영	박길성	한국행정DB센터 소장	홈페이지제작유지보수
갈등교육 및 사례연구	함태우	서천 농업인협장	간사 서천군청 정진형
갈등분석 및 평가연구	정진현	청양대 교수	간사 청양군청 김성근 연구원 청양군청 박정선
갈등협상 및 조정연구	정순희	부여 여성단체협장	간사 부여군청 김형팔
사무국	사무국장 오종화	대천문화원 사무국장	
	운영간사 복규범	보령시청	



창립 취지 및 경과보고

《창립취지문》

우리사회가 민주화, 정보화, 지방화, 세계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분출하고 주권의식과 참여의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사회의 갈등이 증폭하는 원인 가운데 하나는 갈등을 제대로 해결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전문적인 역량이 축적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상생과 협력을 위한 시민문화를 만들어 가고 공공정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에 대한 사전예방과 이의 체계적인 해결노력을 통하여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바람직한 협력의 사회통합적 기틀이 만들기 위하여 중부권역 갈등관리 정책포럼을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경과보고》

- 본 포럼의 창립취지에 공감하는 조규영외 19명이 본 포럼을 창립을 위하여 뜻을 같이 하기로 결의하고
- 2007년 8월 28일 보령시청에서 1차 창립준비위원회 모임을 갖고 창립준비위원회 구성과 임원을 선출하였으며
- 2007년 10월 24일 청양문예회관에서 2차 창립준비위원회 모임을 갖고 정관, 포럼 조직구성, 창립총회 일정 등을 심의하여 확정하고
- 오늘 본 포럼 창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본 포럼을 창립하기까지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신 충청남도, 충남발전연구원, 4개 시군 및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간략히 경과를 보고 합니다



창립선언문

바야흐로 21세기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보편적인 정치체제로 자리잡아가고 지방중심으로 분권화 되어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지역의 상생과 협력을 위해 갈등해소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지난날 성장위주의 개발정책추진의 과정에서 사회갈등, 공공갈등이 증폭되어 왔으며, 앞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는 상생협력과 갈등관리를 위한 실효성 있는 장치가 요구되고 있다

각 분야별로 상생협력과 갈등해소를 위한 나름대로의 연구활동과 개선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으나, 우리지역사회를 보다 협력지향적인 방향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서는 각계각층에서 뜻있는 인사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진지한 담론을 형성하고 대화의 장을 만들어 협력적 커뮤니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다

최근 공공정책추진과 관련된 각종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한번 표출된 갈등은 쉽게 해결되지 않아 사회적으로 많은 비용과 힘겨운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공공정책 및 각종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에 대한 효율적 예방과 이의 체계적인 해결노력을 통하여 더 이상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바람직한 상생협력의 사회통합적 기틀의 마련이 절실하다는 점에 크게 공감한다.



우리 지역에서는 서로 돕고 이끌어 주며,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적 노력의 일환으로 중부권역 갈등관리 정책포럼을 만들어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다

앞으로 이 포럼을 통하여 우리지역의 다양한 참여주체들이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서로의 입장을 교환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우리사회의 갈등사안들을 논의하고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뜻 있는 공론형성의 공간으로 우뚝 서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이에 우리 중부권역 갈등관리 정책포럼 회원들은 포럼의 취지에 찬동하고 우리지역의 발전에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고 협력을 다 한다

2007년 11월 2일

중부권역 갈등관리 정책포럼 회원일동